

電氣料金の 計算方法 <第 2 回>

金 基 昌

(韓電·企劃管理部·料金課)

(2) 一般電力 乙, 特高壓電力 및 農事用 電力

一般電力 乙, 特高壓電力 및 農事用電力 等の 動力需用의 電氣料金は 需用料金(demand charge)과 電力量料金(energy charge)의 二部料金制로 되어 있으며 모두 契約電力을 基準으로 料金を 算定하기 때문에 契約電力의 決定이 大端히 重要性을 가지며 따라서 이에 對한 充分한 知識이 없이는 料金計算도 할 수 없게 된다는 點에 留意하여야 한다.

動力需用의 契約電力은 現行 供給規程上 最大需用電力計(demand meter: 以下 DM로 略稱함)을 付設할 경우와 이를 付設치 않은 경우로 大別하여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러나 原則的으로는 需用家가 電力을 使用함에 있어서 實際 負荷를 基準으로 契約電力을 決定하는 것이 去來上의 公平, 正當한 料金負擔이라는 理論의 根據에서 볼 때 妥當視되며 다만 DM을 付設하지 않은 경우에 負荷設備을 基準으로 契約電力을 算定하는 것은 付設費用 等の 見地에서 이를 付設치 않은 大多數의 中小需用家에 對한 便法에 不過하다는 點을 添記해 둔다.

(가) DM을 付設한 需用家의 契約電力 決定

① DM을 付設한 경우의 契約電力은 料金調定月을 包含한 直前 12個月 中の 最大需用電力으로 한다.

即 1966年 6月分 料金調定時에 直前 12個月의 各月 最大需用電力이 各各

| | |
|----------|----------|
| 1966年 6月 | 1,500 Kw |
| 5月 | 1,550 Kw |
| 4月 | 1,490 Kw |

| | |
|-----------|----------|
| 3月 | 1,600 Kw |
| 2月 | 1,450 Kw |
| 1月 | 1,100 Kw |
| 1965年 12月 | 1,550 Kw |
| 11月 | 1,720 Kw |
| 10月 | 1,600 Kw |
| 9月 | 1,200 Kw |
| 8月 | 1,250 Kw |
| 7月 | 1,100 Kw |

이었다고 假定하면 이 12個月 期間中 가장 큰 需用電力인 1965年 11月の 1,720Kw가 契約電力이 되는 것이며 1966年 6月の 最大需用電力이 1,500Kw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이 달의 契約電力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原理로 上記 例에서 1965年 11月 以後 各月の 最大需用電力은 모두 1,720 Kw 未滿이었으므로 1965年 11月~1966年 6月까지는 1,720Kw가 契約電力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1966年 7月 以後에 있어서도 最大需用電力이 繼續 1,720Kw 未滿일 것으로 假想을 한다면 1965年 11月の 最大需用電力 1,720Kw는 1966年 10月 까지 即 1,720Kw가 示顯된 月을 包含하여 12個月間 有効하게 되며 1966年 11月에 가서야 비로소 그 効力を 잃게 되고 1965年 12月~1966年 11月 間의 最大需用電力이 自動的으로 契約電力이 되게 되는 것이다.

以上에 說明한 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各月の DM에 示顯된 最大需用電力은 恆常 當月을 包含하여 向後 12個月間 有効하다는 意味가 되는 것으로서 契約電力으로 될 可能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理論上으로는 電氣料金 中の 固定費 回收을 爲하여 必要한 制度이고 電氣供給規程上 契約電力 一年間

原則은 이 制度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② 上記 ①은 가장 正常的인 경우의 契約電力 決定方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까지 DM을 付設치 않고 電力을 使用하여 온 既存 需用家가 需用家側 또는 會社側의 必要에 依하여 DM을 처음 付設하는 경우나 또는 新規 需用家가 DM을 付設하는 경우 等に 있어서는 DM 付設期間이 12個月未滿이 되며 따라서 12個月間의 最大需用電力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使用期間中의 最大需用電力을 契約電力으로 하며 다만 DM 付設後 1個月未滿일 경우에는 15日未滿만 그달의 契約電力으로 보지 않으며 15日以上 經過分에 對하여는 DM에 示顯된 最大需用電力을 當該月の 契約電力으로 한다.

15日未滿分の 最大需用電力을 그 달의 契約電力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全然 無効로 되는 것은 아니고 翌月로 돌려서 翌月の 最大需用電力보다 클 때에는 이 翌月の 契約電力으로 한다.

③ DM은 需用家나 會社가 어느 한편의 必要에 依하여 付設할 수 있는 것과 같이 付設한 側의 必要에 따라서 撤去할 수도 있는데 撤去하였을 경우에는 負荷設備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하여 算定한 電力을 撤去한 當月の 最大需用電力으로 看做하여 當月을 包含한 直前 12箇月中의 最大需用電力을 契約電力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大槪의 경우 DM 上의 最大需用電力은 負荷設備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하여 算定한 電力(Kw)보다 적은 것이 普通이기 때문에 DM의 撤去와 同時에 契約電力은 負荷設備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하여 算定한 電力으로 變更되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反對로 過去의 DM上 最大需用電力이 負荷設備入力을 基準으로 算定한 電力보다 큰 경우에도 負荷設備入力基準으로 算定한 電力을 契約電力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點은 잘못 解釋하기 쉬운 것이나 前述한 바도 있듯이 DM 上의 最大需用電力은 需用을 廢止하여 電力供給契約을 解消치 않는 限 恒常 1年間 有效하다는 原則을 理解하면 쉽게 納得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撤去한 DM을 다시 付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 경우에는 DM의 撤去에 依하여 負荷設備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하여 算定한 電力을 契約電

力으로 適用한 期間은 直前 12箇月の 月數로 通算은 하지만 이 期間中 負荷設備入力基準으로 算定한 電力을 最大需用電力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說明을 綜合해서 例를 들면 1965年 4月~1966年 6月까지의 DM의 各月 最大需用電力이 다음과 같은데 1966年 4月 및 5月은 DM을 撤去하여 負荷設備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한 電力이라고 假定할 때

| | | |
|-------|--------------|------------|
| 1965年 | 4月—1,290 Kw | |
| | 5月—1,100 Kw | |
| | 6月—1,150 Kw | |
| | 7月— 900 Kw | |
| | 8月—1,120 Kw | |
| | 9月—1,000 Kw | |
| | 10月—1,000 Kw | |
| | 11月—1,100 Kw | |
| | 12月—1,050 Kw | |
| 1966年 | 1月—1,090 Kw | |
| | 2月—1,100 Kw | |
| | 3月—1,060 Kw | |
| | 4月—1,800 Kw | } (DM撤去期間) |
| | 5月—1,800 Kw | |
| | 6月— 700 Kw | (DM再付設) |

이 경우에 1966年 3, 4, 5月 및 6月の 契約電力은 各各 얼마인가?

| | | |
|-------|------------|----------------------|
| 1966年 | 3月~1,290Kw | (1966.3—1965.4 中 最大) |
| | 4月~1,800Kw | |
| | 5月~1,800Kw | |
| | 6月~1,120Kw | (1966.6—1965.7 中 最大) |

④ DM付設 需用家가 負荷設備을 增設하거나 또는 既設 負荷設備 中의 一部를 廢止하는 경우의 契約電力은 增設이나 一部廢止에 關係없이 調定月을 包含한 直前 12箇月中의 最大需用電力으로 한다. 일 說 생각하기에는 負荷設備의 變動이 있을 경우 特別 一部 廢止한 경우 等に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DM 上의 最大需用電力은 無効가 되고 負荷設備의 變動이 있는 月을 始發點으로 하여 새로 契約電力을 決定하는 것 같이 誤解하기 쉬우나 이는 크게 잘못된 解釋이며 어디까지나 DM 上의 最大需用電力은 負荷設備의 變動有無에 關係없이 12箇月間은 効力을 가지는 것이다.

⑤ DM의 故障으로 因하여 需用電力을 測定할 수 없을 경우에는 DM의 故障期間이 2個月을 超過

하지 않는 限 調定月을 包含한 直前 12個月中の 最大需用電力을 契約電力으로 하며 故障期間이 2個月을 超過할 경우에는 負荷設備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하여 算定한 電力을 最大需用電力으로 看做하여 直前 12個月中の 最大需用電力을 契約電力으로 한다. 그런데 普通의 경우에는 DM 上의 最大需用電力이 負荷設備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하여 算定한 電力보다 낮기 때문에 DM 故障期間이 2個月을 超過하게 되면 負荷設備入力에 依한 電力으로 契約電力을 變更하게 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留意해야 할 것은 上記 ③의 DM을 撤去하였다가 다시 付設하는 경우와 같은 原理로 DM의 故障期間 및 負荷設備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하여 算定한 電力을 契約電力으로 適用한 期間은 直前 12個月의 月數로 通算하나 이 期間中の 契約電力은 最大需用電力으로 看做하지는 않는다는 點이다.

⑥ DM付設 需用家가 어떤 事情으로 因하여 電力需給契約을 解消함으로써 電力會社와의 去來를 끊었다가 同一 需用場所에서 同一 需用家가 需用廢止後 1年 以內에 다시 需用을 再開하는 경우의 契約電力은 需用을 再開한 當月을 包含한 直前 12個月中の 最大需用電力으로 한다. 但 需用을 廢止한 期間은 直前 12個月의 月數로 通算하여야 한다.

上述한 것과 같은 경우는 實際에 있어서 거의 發生하는 것은 아니지만 季節需用과 같은 特殊한 경우의 需用家는 需給契約을 解約하였다가 4~5個月後 다시 需用을 再開하게 되면 過去의 DM上 最大需用電力은 無効로 되고 需用을 再開한 月부터 새로 DM上의 最大需用電力으로 契約電力이 變更되는 것으로 알고 料金負擔을 輕減시키려는 目的으로 이런 일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解釋임을 特別히 留意하여야 한다.

⑦ 以上에서 說明한 것은 DM에 示顯된 實指針을 基準으로 한 여러가지 경우의 契約電力 決定方法이었다.

그러나 實際 DM에 나타난 最大需用電力에 關係없이 契約電力을 決定하는 例外의 경우가 있다.

即 그 하나는 DM付設 需用家라도 需用家가 DM의 實最大需用電力을 超過하여 契約電力을 決定코자 希望하는 때에는 希望에 따라 契約電力을 決定할 수 있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電氣供給規程 第25條에 依하여 電力會社의 工事費 負擔金 決定時에 基

準으로 한 契約電力은 DM付設 與否에 關係없이 電力使用 開始後 1年 以內에는 그 以下の 契約電力으로 變更할 수 없다고 規定한 경우로서 이는 工事費의 電力會社 先負擔金을 當時에 決定하는 契約電力을 基準으로 하여 Kw當의 所定金額으로 計算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措置이다.

(나) DM을 付設하지 않은 需用家의 契約電力 決定

前節 (가)에서는 DM을 付設한 需用家의 契約電力 決定方法을 살펴 보았는데 DM을 付設하지 않은 需用家의 契約電力은 어떻게 決定하는 것인가?

實際에 있어서는 需用家의 大部分이 DM을 付設치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의 契約電力 決定方法이 實用面으로 볼 때 더 잘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M을 付設치 않은 需用家의 契約電力은 負荷設備入力을 基準으로 하여 契約電力 算定을 爲한 乘率表를 適用하여 決定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契約電力은 負荷設備의 入力算出方法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算出된 入力에 對하여 乘率表를 適用하는 方法을 알아야 한다.

① 負荷設備 入力換算方法

(a) 需用家의 契約負荷設備는 特殊機器를 除外한 普通 一般의 使用되는 電動機의 경우는 그 容量表示가 出力(馬力 또는 KVA)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入力 Kw로 換算하여야 하는데 그 換算方法은 다음 表와 같다.

契約負荷設備 入力換算率表 (電動機의 경우)

| 契約負荷設備의 出力表示區分 | 單位容量 | 入力Kw 換算率 | 備 考 |
|----------------|--------|----------|---------|
| 馬力으로 表示된 것 | 15馬力까지 | 100% | 負荷設備單位當 |
| | 15馬力超過 | 85% | |
| Kw로 表示된 것 | 15Kw까지 | 133.3% | |
| | 15Kw超過 | 113.3% | |

이 表에서 注意할 것은 備考欄에 記述한 바와 같이 負荷設備의 容量이 負荷設備 1個當 容量(單位當 容量)이며 몇個의 負荷設備를 合한 容量이 아니라 는 點과 單位容量 15馬力 超過分에 對한 入力換算結果 15Kw 未滿일 때에는 15Kw로 看做한다는 點이다.

以上 說明한 것을 實例를 들어서 入力을 換算해 보면 어떤 需用家의 契約負荷設備인 電動機가

出力 . 5 HP — 2 臺
 16 HP — 1 臺
 80 HP — 1 臺
 7 Kw — 1 臺
 50 Kw — 1 臺

가 있을 경우 入力Kw는 다음과 같이 換算된다.

5HP×2臺×100% = 10Kw
 16HP × 1臺×85% = 15Kw (13.6Kw이나 15Kw로 看做)
 80HP×1臺×85% = 68Kw.
 7Kw×1臺×133.3% = 9.331Kw
 50Kw×1臺×113.3% = 56.65Kw
 入力Kw 計 158.981 Kw

(註: 上記 入力Kw는 이를 契約電力算定乘率表에 依하여 契約電力을 算定하는 以前段階로서 小數點以下 Kw를 切上치 않음).

(b) 上記의 경우는 一般의 使用되는 電動機의 경우이었는데 이와는 다른 경우로서 電氣鎔接機 및 電氣爐 等 特殊機器에 對하여는 當該 機器에 附着된 變壓器 容量(Kw 또는 KVA)을 그대로 入力Kw로 한다.

即 特殊機器에 附着된 變壓器의 出力容量이 350Kw (또는 KVA)일 경우 入力Kw도 350Kw(350Kw×100%)가 된다.

② 入力Kw로 契約電力을 算定하는 方法

(a) 契約負荷設備 各個의 入力이 算出된 然後에는 이 入力Kw의 合計Kw에 對하여 다음 乘率表를 適用하여 契約電力을 算定하게 된다.

契約電力 算定乘率表

| 負荷設備 入力 | 乘 率 |
|----------------|------|
| 처음 75Kw에 對하여 | 100% |
| 다음 75Kw에 對하여 | 85% |
| 다음 75Kw에 對하여 | 75% |
| 다음 75Kw에 對하여 | 65% |
| 300Kw 超過分에 對하여 | 60% |

但 이 경우 上記 乘率을 適用計算한 Kw를 合計한 Kw에 1Kw 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는 이를 切上 하여야 한다.

前記한 ①-(a)에서 例示하였던 入力Kw 合計 158.981Kw의 경우를 가지고 이 乘率表를 適用하여 契約電力을 算定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75Kw×100% = 75Kw
 75Kw×85% = 63.75Kw
 8.981Kw×75% = 6.736Kw
 計 145.486Kw

따라서 契約電力은 146Kw(1Kw 未滿 端數 切上)이다.

(b) 그런데 上記 (a)에서는 負荷設備 各個의 單位當 入力Kw가 모두 75Kw 未滿의 경우이었다. 그러나 各個 負荷設備中 어떤 한個나 몇個 또는 全部의 入力Kw가 75Kw를 超過할 경우에는 (a)에서 例示한 方法으로 契約電力을 算定하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乘率表를 適用함에 있어서 負荷設備가 第一 큰 것부터 順次로 60%까지 適用하여 契約電力을 算定하여야 한다.

例를 들면 어떤 需用家의 契約負荷設備 各個의 入力Kw가

300Kw — 1臺
 250Kw — 1臺
 170Kw — 1臺
 125Kw — 1臺
 90Kw — 3臺 일 경우에 契約電力은 다음

과 같이 算定된다.

300Kw×1臺×100% = 300Kw
 250Kw×1臺×85% = 212.5Kw
 170Kw×1臺×75% = 127.5Kw
 125Kw×1臺×65% = 81.25Kw
 90Kw×3臺×60% = 162Kw
 計 883.25Kw

따라서 契約電力은 884Kw이다.

上記 例와는 조금 다른 경우로서 契約負荷設備 各個의 入力Kw가

230Kw — 1臺
 73Kw — 1臺
 50Kw — 3臺
 10Kw — 5臺
 5Kw — 8臺 일 경우의 契約電力은 다음과

같이 算定된다.

230Kw×100% = 230Kw
 73Kw×85% = 63.75Kw
 75Kw×75% = 56.25Kw
 75Kw×65% = 48.75Kw
 88Kw×60% = 52.8Kw
 計 451.55Kw

따라서 契約電力은 452Kw이다.

③ 豫備負荷設備을 施設한 경우의 契約電力

需用家の 負荷設備 中에는 他 負荷設備와 同時에 稼動할 수 있는 狀態로 施設된 것이 一般的이긴 하나 間或 技術的으로 他 負荷設備와 同時에 稼動할 수 없는 施設을 한 것으로서 純交代用 使用을 爲한 豫備負荷設備가 있다.

이 경우 豫備負荷設備는 契約電力 算定對象에서 除外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豫備負荷設備는 本負荷設備容量 限度를 超過할 수 없으며 萬若 超過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本設備를 除外하고 豫備設備를 契約電力 算定對象으로 하여야 한다.

④ 單獨變壓器를 通하여 供給하는 경우의 契約電力

單獨 變壓器를 通하여 供給하는 需用家の 契約電力은 該 變壓器 表示容量의 130%를 超過하지 못한다. 이 경우 容量限度는 KVA를 Kw로 看做하여 이를 入力限度로 하며 V結線時에는 $KVA \times 86.6\% \times 130\%$ 를 入力限度로 한다.

이와 같이 變壓器의 表示容量을 基準으로 하여 契約電力을 決定할 때에는 負荷設備의 경우처럼 乘率表를 適用하지 않으며 算定된 入力 Kw가 곧 契約電力이 된다.

⑤ 電燈, 動力 併用의 경우의 契約電力

(a) 電燈, 動力의 變壓器가 同一한 경우에는 電燈은 一般電力 甲의 Kw算定方法, 動力은 負荷設備 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하는 Kw算定方法으로 各 各 算定한 電力을 合計한 Kw를 契約電力으로 한다.

예를 들면 어떤 需用家の 電燈, 動力施設이 다음과 같다고 하면

(電燈施設)

白熱電燈 60w-14燈
螢光燈 20w-40燈

(動力施設)

5HP (出力容量)-12臺
30HP (")-2臺
70Kw (")-1臺

變壓器가 同一한 경우 契約電力은 다음과 같이 算定된다.

(電燈)

$60w \times 14燈 = 840w$
 $(20w + 4w) \times 40燈 = 960w$ (螢光燈이므로 燈

當 4w 加算)

計 1,800w (1.8Kw)
(動力)
 $5HP \times 12臺 \times 100\% = 60Kw$ (入力)
 $30HP \times 2臺 \times 85\% = 51Kw$
 $70Kw \times 1臺 \times 113.3\% = 79.31Kw$
計(入力) 190.31Kw
 $75Kw \times 100\% = 75Kw$
 $75Kw \times 85\% = 63.75Kw$
 $40.31Kw \times 75\% = 30.233Kw$
計 168.983Kw
(電燈, 動力合計...契約電力)
 $1.8Kw + 168.983Kw = 170.783Kw$
即 契約電力은 171Kw이다.

(b) 電燈, 動力의 變壓器가 各各 區分될 경우에는 電燈은 變壓器 容量을 그리고 動力은 負荷設備 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 算定한 電力을 合計한 Kw를 契約電力으로 한다.

以上에서 說明한 (a)와 (b)의 경우를 比較해 보면 供給變壓器가 同一한 경우와 區分될 場合에 電燈에 있어서는 Kw算定方法이 다르나 動力에 있어서는 같은 方法임을 알 수가 있다.

(다) 深夜電力需用家の 契約電力 決定

一般電力 乙과 特高壓電力 需用家에 있어서는 常時電力 以外에 深夜電力制度가 있으며 深夜電力에는 併用과 單獨의 두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前章 料金種目에서 說明한 바 있다.

그러면 深夜電力의 契約電力은 어떻게 決定하는가?

深夜電力의 契約電力은 常時電力의 경우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으며 同一한 方法으로 算定한다. 다만 併用이든 單獨이든 深夜電力의 契約電力은 一定한 最低電力의 限度가 있으며 또한 併用深夜電力의 경우는 몇가지 알아야 할 例外的 事項들이 있는데 그 內容은 以下에서 詳說하기로 한다.

① 併用深夜電力은 常時電力需用家가 深夜에 常時電力을 超過하여 使用하는 需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使用電力도 電力會社가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타임·스위치 또는 DM과 積算電力計를 付設 測定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計測器上的 最大需用電力에 依하여 契約電力을 決定하게 된다.

따라서 負荷設備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하는 契約電力算定方式은 適用할 수가 없게 되는데 併用深夜電力의 最低契約電力은 一般電力 乙이든 特高壓電力이든 50Kw로 하며 50Kw 未滿일 때 例를 들면 46 Kw일 경우라도 50Kw로 하여 契約하여야 한다.

한편 併用深夜契約電力은 常時電力의 2倍를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로 한다.

그러므로 어떤 需用家の 深夜最大需用電力이 常時契約電力의 2倍를 超過한 경우에는 그 超過한 電力의 1/3은 常時契約電力에, 그 2/3는 深夜契約電力에 各各 加算하여 契約電力을 變更하게 된다.

例를 들면

當初 常時契約電力 200Kw

當初 併用深夜契約電力 380Kw이었는데 深夜需用電力 實績이 445Kw가 되었다고 假定할 경우 常時와 深夜의 契約電力은 各各 다음과 같이 變更된다.

變更常時契約電力 :

$$200Kw + (445Kw - 400Kw) \times \frac{1}{3} = 215Kw$$

變更深夜契約電力 :

$$380Kw + (445Kw - 400Kw) \times \frac{2}{3} = 410Kw$$

② 單獨深夜電力은 專用線路上에 依하여 常時電力과는 別負荷 別計量으로 供給하는 深夜需用이므로 그 契約電力은 適當하다고 認定된 計測器에 依하든지 또한 負荷設備入力에 對한 乘率表를 適用하여 算定하든지 間에 常時電力의 契約電力 決定方法의 경우와 同一하며 但 最低契約電力은 一般電力 乙은 50Kw

이나 特高壓電力의 경우는 1,000Kw로 되어 있다.

(3) 街路燈

街路燈의 電氣料金은 負荷設備容量 w當으로 計算하기 때문에 需用家の 使用하는 電球의 w數를 決定하여야 하는데 白熱電球에 있어서는 電球에 表示된 出力表示容量(w)을 基準으로 하고 螢光燈의 경우는 前節 一般電力 甲에서 說明한 바 있는 「w數換算表」에 依하여 加算w數를 加算하면 된다.

(4) 定額電燈

定額電燈의 電氣料金도 負荷設備容量 w當으로 計算하기 때문에 需用家の 電球 w數를 決定하여야 하는데 白熱電球나 螢光燈이나 모두 街路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方式으로 算定한다. 다만 라디오가 있을 경우에는 1臺當 20w로 計算한다.

例를 들면

白熱電球 20w 1燈

螢光燈 20w 1燈

라디오 1臺가 있는 需用家の 總負荷設備

容量은 다음과 같이 算定된다.

白熱電燈 20w × 1燈 = 20w

螢光燈 20w + 4w × 1燈 = 24w

라디오 1臺 × 20w = 20w

計 64w

(次號에 繼續)

大韓電氣協會 (Korea Electric Association) 마아크 圖案

(懸)

(賞)

(募)

(集)

電氣協會誌 第4號 揭載 公告로 實施한 當協會 마아크 圖案 懸賞募集에는 相當數의 應募가 있었으나 이를 慎重히 審査한 結果 哀惜하게도 當選作 및 佳作을 뽑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第9次 定期 常任理事會의 決議에 依據 이를 再次 懸賞募集키로 되었으나 이미 應募하여 주신 分은 勿論이고 其他 여러분께서도 아래의 要領으로 널리 應募하여 주시기를 懇曲히 바랍니다. (會員 非會員 不問)

1. 趣 旨

本協會의 設立目的 및 事業內容(定款 第3條 및 第4條 參照)을 象徵함과 同時에 特히 外國 電氣協會와의 國際的 紐帶面를 強調할 수 있는 現代的 感覺의 圖案인 것.

2. 規 格

20cm² 白色 磅紙에 色度는 2色 以內. 裏面에 住所 姓名을 明記하고 說明文을 別添할 것.

3. 마 감 1966年 11月 10日

4. 提 出 處 大韓電氣協會 事務局

5. 賞 金 當選作 1點 15,000원 整

佳作 1點 5,000원 整

6. 審 査 斯界 權威者 및 協會 事務局

7. 發 表 電氣協會誌 第6號

(1966年 11月 30日 刊行豫定)

8. 其 他

當選作品에 對한 權利는 本協會가 保有하며 應募作品은 一切 返還치 않음.